

“일변런 지적 재산 센터”의 활동과 역사

일변런 지적 재산 센터¹

1. 들어가며

“일변런 지적 재산 센터”(이하 “지재 센터”라 한다)는 지적 재산권의 확립·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이하 “일변런”이라 한다)의 지적 재산 분야 전문 특별 위원회이다^{3, 4}.

조직의 계보는 아래와 같다. 일변런의 역사에 필적 할 정도의 전통을 가진 “지적 재산 제도 위원회”와 2002년(헤이세이 14년) 2월 25일 고이즈미 내각이 “지적 재산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 재산 전략 본부⁵의 설치가 결정된 것에서 동년 6월 22일 일변런에 설치된, 일본 변호사 연합 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 재산 정책 추진 본부”가 발전 통합되어 2009년(헤이세이 21년) 6월 1일에 탄생한 조직이며, 일변런의 지적 재산 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에서 조직의 개요 및 연혁을 소개한다.

2. 지적 재산 센터 조직의 개요

(1) 목적

지적 재산 센터의 목적은 "지적 재산권의 확립, 보급 및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 제도 등 사법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더 나은 지적 재산 제도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회원이 지적 재산권 업무에 관여하기 위한 시책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일변런 지적 재산 센터 설치 요강 2조).

(2) 임무

지재 센터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일변런 지적 재산 센터 설치 요강 3조).

- 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제언
- ② 지적 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대한 입안 및 제언
- ③ 지적 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대한 정부, 심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 및 교류
- ④ 지적 재산에 관한 법조인 양성 및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⑤ 지적 재산에 대한 회원의 업무 확대에 이바지하는 활동
- ⑥ 기타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 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활동

(3) 위원 구성

지재 센터의 위원 수는 85명 이내로 규정되며, 도쿄, 오사카, 아이치 현 같은 대도시(많은 변호사 회원이 등록된 단위회)에서 소정의 인원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기타 전국 각 지역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 지역(홋카이도 변호사 연합회 등 고등법원 소재지 단위로 조직되는 각지의 변호사 연합회)에서도 최소 2명의 위원이 선임된다. 지재 센터의 위원은 각 지역 및 단위 위원회의 추천을 참고로 하여 일변런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 또한 가능하다⁶.

2013년도⁷에는 위원장 이하 76명의 위원이 전국 단위회에서 선출되었다. 지재 센터의 위원 중에는 정부의 지적 재산 전략본부,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 심의회 및 특허청의 각종 검토회,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등의 위원으로 있는 사람도 많으며, 또한 마키노 토시아키(제1)를 비롯하여 도쿄 고등법원 · 지재 고등법원 등 기타 법원의 지적 재산권 전문 부서에서 풍부한 직무 경험이 있는 전직 판사, 심지어는 외무성이나 경제산업성의 임기부 직원으로의 근무 경험이 있는 위원도 있어 실로 유수의, 실력과 양 모두 풍부한 진용을 자랑하고 있다.

(4) 직책

지재 센터의 직책으로는 위원장⁸ 1명,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게되며, 그 임원은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결정된다. 임기는 1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또한, 2009년(헤이세이 21년) 6월 지재 센터 설립 이후 올해까지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 |
|-------------------------------------|------------------------|
| 2009 년도 이이다 히데사토 (도쿄 ⁹) | 2012 년도 마츠모토 츠카사 (오사카) |
| 2010 년도 카타야마 에이지 (제1) | 2013 년도 하야시 이즈미 (도쿄) |
| 2011 년도 스에요시 와타루 (제2) | |

(5) 사무국

지재 센터에는 위원의 변호사로 구성된 사무국이 설치되어, 2013년도(헤이세이 25년)에는 사무총장 1명과 사무국 차장 1명 외에, 도쿄 주재, 오사카 주재의 단위회에서 24명의 기백이 날카로운 변호사가 사무국원으로 선임되었다¹⁰.

(6) 간사

지재 센터에는 으레 몇 명의 간사를 둔다¹¹. 간사의 직책은 “회장 또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의 입안, 정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특별위원회 규칙 제 10조 4항).

2013년도에 간사로 위촉된 자는 요시하라 슈조(도쿄), 타케다 미노루(도쿄), 나카야마 노부히로(제1), 고바야시 토시오(제2), 쿠보리 히데아키(제2)와 코조 하루미(제2)이며, 어느 쪽도 뒤떨어지지 않는 지적 재산권계의 중진이다. 당연히 간사는 그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시 적절하게 지재 센터의 운영과 의견 형성 과정 등에 대해 조언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¹², 의안의 입안이나 자료의 수집, 정리 같은 사무적인 작업을 수행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작업은 바로 정, 부위원장 및 사무국 직원의 직책이다.

3. 지적 재산 센터의 활동 형태

(1) 전체 회의

위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전체 회의”라 한다)는 한 달에 한 번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쿄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변호사 회관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위원이 모여 개최된다. 먼 곳에 있는 위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많을 때에는 전국 5, 6개소의 위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전체 회의에서는 사무총장의 의사 진행 하에 퍼블릭 코멘트 대응 등의 법제도 개혁 관련 이슈(일변련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의견서 등의 초안 작성), 지재 연수 등 기타 이벤트 관련 이슈(기획, 준비, 실행), 변호사 업무 안전, 법원과 특허청 등의 지적 재산 관계 국가 기관이나 지재 관련 업계 단체,

기타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 관련 단체와의 의견 교환이나 제휴에 관한 안건 등의 각종 심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사항의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2) 프로젝트 팀(PT) 등의 설치

지재 센터는 80명 정도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큰 단체이고, 항상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다면 좀처럼 논의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회적인 의미에서 분야마다 프로젝트 팀(PT)이 조직되어 있다. 2013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PT는 특허 PT(좌장 츠지이 코이치), 디자인 · 상표 · 부정경쟁 PT(좌장 마즈오 카즈코), 저작권 PT(좌장 · 와세다 유미코), 국제 PT(좌장 무라타 신이치), 연수 · 업무확대 PT(좌장 스에요시 와타루), 섭외 PT(좌장 사가 다카요시)의 6PT이다.

지재 센터의 각 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PT를 선택하고, 그 곳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한다. 각 PT에서는 그때 그때의 취급 사항(위원장 및 전체 회의로부터 개별 안건의 조사 및 준비 활동 등이 회부된다)에 관하여 전체 회의 당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PT 회의가 개최되고 논의되는 것이 많지만, 그 외에도 임기응변으로 회의가 개최되거나, PT마다 만들어져 있는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³. 그리고 각 PT에서 준비하여 논의 된 것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더욱 의논이 진행되어 지재 센터로서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 PT와는 별도로 지재 센터 횡단적으로, 테마마다 검토 팀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2013년도에는 지재 재판제도 검토 팀이 설치되어, 위원장 이하 16명의 위원이 지적 재산권 재판 제도에 관한 개별 테마의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정, 부위원장, 사무국 회의

일반적으로 전체 회의 개최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모임 형식으로 그 날 전체 회의에서의 심의 사항 등 협의로 정, 부위원장, 사무국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어디 까지나 전체 회의에서의 심의 순서와 시간 배분, 보고자의 확인 등의 사무적인 것이며, 실질적인 심의는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것이 예정되어있다.

4. 지적 재산 센터의 활동 내용

(1) 최근 주요 일변론 의견¹⁴

①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 처벌 도입에 대한 의견서 등

일변론은 2011년(헤이세이 23년) 12월 15일자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 저작권법 30조 1항 3호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소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2012년(헤이세이 24년) 6월 21일에는 일변론 회장 성명(당시 회장은 야마기시 켄지이다)도 내놓았다. 해당 회장 성명에서, “불법 다운로드 형벌화”의 수정안은 정부 제안의 저작권법 개정안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며, 이것이 수정 동의로 제시되는 것 자체가 법률 개정의 본연의 자세로서 중대한 의심이 들고, 졸속 심의로서의 입법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향후 과제로서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및 음악 · 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해 불법 다운로드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한 계몽 등을 추진하는 것, 특히 미성년자가 불법 다운로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 ② 음악 · 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인터넷 방송 등에서 음악 및 영상을 불법인지 모르고 녹음, 녹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엠 마크의 사용 및 주지 철저 등에 의해, 쉽게 불법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히 강구할 것, ③ 경찰·검찰에 대한 수사권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철저히 하는 것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당한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② “상표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안)에 대한 의견서

일변련은 2013년(헤이세이 25년) 1월 16일자로 “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 부회 상표제도 소위원회 보고서 “상표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했다.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의 도입에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움직임”, “윤곽 없는 색채” 또는 “소리”등의 비 전통적인 상표(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며, 즉시 “상표”의 정의에 상표의 본질적 요소인 자타 상품 역무의 식별성을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 것이다.

③ 특허 부여 후 이의 제도의 부활에 대한 의견

일변련은 2013년(헤이세이 25년) 1월 16일자로 “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 부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보고서 “강하게 안정된 권리의 조기 설정 및 사용자의 이용성 향상을 위해”(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현재 도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여 후 리뷰 제도”는 2003년 특허법 개정으로 폐지된 특허 부여 후 이의 신청 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동 개정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부여 후 리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폐지 된 이의 신청 제도에 대해 지적 된 피해를 해소하는 대책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④ TPP (지적 재산권 분야) 관련

일변련에서 2013년(헤이세이 25년) 7월 19일자로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협정 협상에 대한 의견(2)”라는 제목의 의견서가 공표되고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검토 항목에 대해, 의견서 검토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텍스트 열람을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점의 것이다).

- a. “시각적으로 인식 할 수 없는 상표”에 붙여, “냄새 상표”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구미에서도 유지되는 등록 예는 얼마 있지 않고, 그 필요성을 포함하여, 도입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b. “지리적 표시”에 대해, 일본은 지리적 표시 관련 제도로서 i.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조 1항 13호(품질 오인 표시의 금지, 지적 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TRIPS”제 22조에 해당), ii. 주세 보전 및 주류 사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의 6에 따른 산지 표시(국세청 고시) 및 제법(법령 해석 통지)(TRIPS 제 23조에 해당)과 iii. 지역 단체 상표(상표법 제 7조의 2)가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단체 상표는 지역의 명칭·상품 또는 역무의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 전국 수준의 주지성을 완화하여 지역 브랜드에 대한 단체에 의한 상표권 취득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향후 법안화가 예정되어있는 상표법 개정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체요건의 완화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증명 상표 제도의 활용도 검토되고 있기에,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심사 기준 및 상표 등의 기존 명칭과의 관계 정리도 시야에 넣어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c.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이미 2006년(헤이세이 18년) 12월에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과정을 밝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바, 만일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른바 “고아 저작물(orphan works)”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d. “저작권 침해 사건의 비 친고죄화”에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2007년(헤이세이 19년) 2월에 비 친고죄 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바, 저작물의 이용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비 친고죄화는 일반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⑤ 내각 법제국 등에 대한 의견

일본련은 2013년(헤이세이 25년) 6월 20일 “2012년 저작권법 개정(헤이세이 24년 법률 제 43호)의 법령 심사 과정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내각 법제국 등에 제출하고 공표하였다.

이것은 소위 일본 저작권법 규정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심의 된 2012년 개정 저작권법(헤이세이 24년 법률 제 43호)에 관하여, 문화청이 내각 법제국에 대해 2011년 11월 15일 제출한 개정법의 원안은 2011년 1월의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서 1개조 권리 제한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었는데,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안은 4개조 개별 규정이 수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행정 문서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문화청 및 내각 법제국에서 자료를 수령하여 자료를 조사했지만 그 수정의 경위 및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문서 공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행정 기관의 심의 검토 과정을 포함한 입법 과정 전반이 기록, 저장되어 마땅하며, 또한 국민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상기 수정 경위 이유에 대해 문화청과 내각 법제국에 대해 이를 공개하라는 내용과 함께, 향후 법안 수정에 관한 경위 및 이유에 대해 기재 한 문서를 작성, 저장하고 국민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공개 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의견서이다.

(2) 지적 재산 고등 법원 및 도쿄 지방 법원 · 지적 재산권 부와의 의견 교환회

지적 재산 센터는 1999년(헤이세이 11년)부터 매년 1회, 지적 재산권 소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 재산 고등 법원, 도쿄 지방 법원의 지적 재산권부¹⁵와 의견 교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도(헤이세이 12년도) 내지 2012년도(헤이세이 24년도)의 의견 교환회 내용은 판례타임즈에 공표되어 있다(판례타임즈 1051호, 1095호, 1124호, 1160호, 1177호, 1179호, 1207호 1240호, 1271호, 1301호, 1324호, 1348호, 1374호, 1390호).

또한 2013년(헤이세이 25년) 1월 22일에 개최된 2012년도(헤이세이 24년도) 교환회는, 법원 측의 경우 지적 재산 고등재판소에서 11명, 도쿄지방법원에서 2명의 재판관이 참석하여 2011년 개정 특허법 하에서 실무의 운용이나 국제 소송 등을 주제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3) 국제 전개

① 국제 회의 개최 지원, 의견 표명 등

국제 변호사 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¹⁶의 일본 대회가 2014년(헤이세이 26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사전 이벤트가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적 재산

소송 제도를 소개하는 기획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②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 공장이나 사업소를 확장하거나 또는 국제 거래를 할 경우에 해당 국가의 법 제도나 법률 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업 활동을 전개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경우 중소기업에는 법률 전문가에 대한 액세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지재 센터는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에 이바지하는 지적 재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각종 단체와의 협의

필요에 따라 지적 재산 관련 단체와의 의견 교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정보 공유 및 논의의 심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2년도(헤이세이 24년도)에는 같은 해 11월 1일에 일본 지적 재산 협회 특허 제 1~3위원회, 라이선스 위원회와의 의견 교환회를 실시했다. 일본 지적 재산 협회와의 협의회는 통례 연 1회 개최되며, 산업계의 요구와 질문을 지적 재산 법조인으로서 들어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회가 되고 있다.

(5) 지적 재산법 연수 실시

지재 센터는 일변련의 연수에 있어서도 지적 재산 전문 변호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헤이세이 15년) 이후 매년 교육 과정의 편성(강사 및 주제 선정)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¹⁷ 중심이 되어 지적 재산법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 재산법 교육은 법 개정 등의 움직임에 맞춘 때맞춤 교육부터, 관련 업계에서 변호사 이외의 강사를 부르는 등 지적 재산 관련 업계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것까지 폭 넓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5. 지재 센터의 연혁

(1)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의 계보

①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

1963년(쇼와 38년) 2월 19일 개최된 일변련의 전체 이사회에서 의제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이 심의되고, 설치가 결정되었다(초대 위원장은 나가이 알렉산더(제2)이다.)¹⁸.

지금까지 공업소유권 법제의 대개정에 즈음하여 임시로 개정 조사위원회가 조직된 적은 있었지만¹⁹, 상설위원회로 설치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일변련에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검토된 계기는 1962년 12월 12일에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에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가 설치되었고²⁰, 동년 12월 19일자로 후쿠다 하지메 통상성 장관이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 회장 앞으로 공업 소유권 제도의 기본적 사항의 개정에 대한 자문²¹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변련에서 그러한 공업소유권제도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10~15명 정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를 위촉하고, 일변련의 의견을 심의회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② “무체재산권 제도위원회”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는 1972년(쇼와 47년) 2월 19일 일변련 이사회에서 “무체재산권 제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 위원장은 미즈이시 시로(제2)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작권 분야의 대응이 허술했던 것에서, 이후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 분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강학상 공업소유권법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무체재산권”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③ “지적소유권위원회”

“무체재산권 제도위원회”는 1989년(헤이세이 원년) 2월 17일 일변런 이사회에서 “지적소유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 위원장은 혼마 타카시(도쿄)이다). 이는 당시 언론 보도 등을 보아도 “무체재산권”이라는 명칭보다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이를 계기로 특별위원회 설치 요강이 정비 된 것이다.

④ “지적재산 제도위원회”

“지적소유권위원회”는 2003년(헤이세이 15년) 9월 20일 일변런 이사회에서 “지적재산 제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 위원장은 코마즈 요이치로(오사카)이다). 이는 같은 해 7월 8일 정부의 지적 재산 전략 본부에서 공표된 “지적 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 계획”에서 향후 법령, 조약 등에서 사용되는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 해 나가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제도위원회의 목적 · 임무는 “1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조사 · 연구,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의 입안, 3 각종 심의회나 기타 정부 기관에 대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변런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지적 재산권 제도위원회 설치 요강 2조). 위원 수는 35명 이내이다.

(2) “지식 재산 정책 추진 본부”의 계보

앞서 언급했듯이, 고이즈미 내각은 2002년(헤이세이 14년) 2월 25일 우리나라에 지적 재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총리 관저에서 총리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지적 재산 전략 회의”를 설치하였고, 동 회의는 같은 해 7월 3일 “지적 재산 전략 대강”을 발표했다.

이 움직임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 일변런에서도 2002년(헤이세이 14년) 6월 22일 이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 전략의 사법 관련 사항(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 지적 재산권 관련 법조 양성 문제, 변호사 연수 등)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와 협의 · 교류하고 정책을 제언하고, 지적 재산 관련 법조 양성 등 스스로가 실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목적으로 일변런 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식 재산 정책 추진 본부”를 설치했다(지적 재산 정책 추진 본부 설치 요강 2조. 당시 본부장은 모토바야시 토오루 일변런 회장이다).

본부의 위원 수는 50명 이내이며, 지역성을 고려하여 일변런 회장이 지적 재산 소송 실무에 정통한 자(변호사)를 위촉하는 형태로 선임되었다.

(3) “지적 재산 제도위원회”와 “지적 재산 정책 추진 본부”의 통합 · 발전

앞서 언급했듯이 1963년부터(임시위원회를 포함하면 1951년부터), 공업 소유권 및 저작권 법제에 주로 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적 재산 제도 위원회”와, 지적 재산 관계 분야의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 재산 정책 추진 본부”는 별도의 계보가 있고 각각 활동하고 있었지만, 법제 이론 면의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 등은 서로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 활동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조직을 통합하여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2009년(헤이세이 21년) 발전적으로 통합되게 되고, 위원 수 85명 이내라는 일변련의 다른 위원회의 규모와 비교해도 대규모인 지재 전문 특별위원회가 탄생하고 그 명칭도 “일변련 지적 재산 센터”로 변경되었다.

6. “변호사 지재 넷”의 창설

위 일변련의 “지적 재산 정책 추진 본부”의 활동 속에서 탄생한 조직으로 “변호사 지재 넷”이 존재한다²².

변호사 지재 넷은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의 창설과 궤를 같이하여 2005년(헤이세이 17년) 4월 8일에 설립된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로서, 변호사의 지적 재산 관련 업무의 지역 밀착 사법 서비스의 충실과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사법 서비스의 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초대 이사장은 일변련 사무 차장 경험자의 아이타니 쿠니오(제2)이다). 일변련은 연합체이기에, 직접 외부에서 지적 재산 관련 업무 상담과 계약 등을 받기 어려운 면도 존재하므로, 지적 재산권 법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말하자면 별동대라는 의식에서 창설된 지적 재산 전문 조직이다. 변호사 지재 넷에서는 더욱 기동적으로, 더욱 광역적으로 업무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개별 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의 지적 재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을 8개의 구획(홋카이도 지역회 동북 지역회, 관동 코신에즈 지역회, 츄부 지역회, 킨키 지역회, 시코쿠 지역회, 츄고쿠 지역회, 큐슈 · 오키나와 지역회)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재 센터 위원의 대부분은 변호사 지재 넷의 이사도 겸임하고 있으며, 두 조직은 높낮이를 맞추며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큐슈 · 오키나와 지역회는 지리적으로 아시아로 열린 창구라고도 할 수 있기에, 재빨리 지역 기업의 해외 전개의 법률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고, “중국 진출 리갈 팩”과 “중국 거래 리갈 팩”등의 저렴한 정액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²³.

7. 지적 재산권 중재 센터의 활동

일본 변리사회와 일변련은 1998년(헤이세이 10년) 3월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분야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공업소유권 중재센터”라는 명칭의 ADR(재판 외 분쟁 해결 수단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동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 이후 취급 분야를 지적 재산권 일반으로 넓혀 그 명칭도 2001년(헤이세이 13년) 4월부터 “일본 지적 재산 중재센터”라 변경하였다.

일변련은 그러한 “일본 지적 재산 중재 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일본 지적 재산 중재 센터”의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위원의 수는 40명 이내). 동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은 지적 재산 센터의 위원이 겸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지적 재산 중재 센터”에는 도쿄 본부, 간사이 지부, 나고야 지부 외에, 홋카이도, 센다이, 히로시마, 다카마쓰, 후쿠오카 등의 5개소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 지소의 설립 운영에는 변호사 지재 넷의 각 지역위원회 일원이 핵심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다.

8. 끝으로

지적재산권 법제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유지 ·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자칫하면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 독점권의 강화라는 일면적인 가치관이

강조되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 생활의 사적 영역에 직접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법도 존재한다. 지재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사회 정의의 실현(변호사법 1조)"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항상 의식하며, 사법 제도를 담당하는 실무 법조인의 입장에서 전 법질서의 중심에 있는 균형 잡힌 지적 재산권 법제의 구축 및 실무 운용을 목표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²⁴. 이상.

1. 문책: 일변련 지적 재산 센터 위원장 · 변호사 하야시 이즈미, 사무 총장 · 변호사 이하라 토모키.
2.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변련)은 전국 52개의 변호사회(기본적으로 각 도도부현 단위로 한 변호사회가 있으며, 도쿄에는 “도쿄 변호사회”, “제 1 도쿄 변호사회” 및 “제 2 도쿄 변호사회”의 3개 회가 존재하고, 홋카이도에는 “아사히카와 변호사회”, “쿠시로 변호사회”, “삿포로 변호사회” 및 “하코다테 변호사회”의 4개 회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각 지역에 존재하는 변호사회는 “단위회”라 불리기도 한다.), 변호사 및 변호사 법인 등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된 법인이며, 일본 전국 모든 변호사 및 변호사 법인은 각지의 변호사 회에 입회함과 동시에 일변련에도 등록해야 한다. 일변련은 일본국헌법의 제정에 따른 전후의 사법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변호사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1949년(쇼와 24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3년 9월 1일 현재 변호사 33,581명이 등록되어 있다.
3. 일변련은 자격 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 인권위원회와 사법 제도 조사회 등의 상시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목적별로 많은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며, 일변련 지재 센터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각 특별위원회 등의 명칭은 반드시 “○○위원회”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 아니라, “센터”, “본부”, “회의”, “협의회”, “워킹 그룹”등의 다양한 명칭이 적절하게 부여된다.
4. 2009년 2월 19일자 일변련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일변련 지적 재산 센터 설치 요강”에 근거를 둔다.
5. 지적 재산 전략 본부의 연혁은 다음 URL에 명시되어 있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enkaku.html>
6. 지재 센터뿐만 아니라 일변련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규칙 (1968년 7월 20일 규칙 제 22호 [최종 개정 2001년 11월 20일])에 근거를 둔다.
7. 일변련의 연도는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다.
8. “센터장”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정식으로는 “위원장”이다.
9. 이름 뒤에 기재된 도시의 이름은 소속 단위회를 가리키며 “제1”, “제2”는 각각 “제 1 도쿄변호사회”, “제 2 도쿄변호사회”를 가리킨다.
10. 사무국원은 지적 재산 관련 업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견(2013년도에는 45기 이상)의 도쿄 주재, 오사카 주재 변호사에게 부탁하고 있다.
11. 특별위원회 규칙 제 10조에 따른 것이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와(동조 2항),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 이외의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동조 3항)가 있는데, 지재 센터의 간사의 경우 후자이다.
12. 특별위원회 규칙 제 10조 4항의 조문 해석에 관해, “...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의 “등”에 포함 된 것이다.
13. 각 위원은 정규 소속 PT 이외의 PT 메일링 리스트에 임의로 가입 할 수 있어 여러 PT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14. 일변런 의견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일변런 웹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opinion/category/intellectual.html>
15. 도쿄 지방 법원은 민사 제 29부, 동 40부, 동 46부, 동 47부가 지적 재산권 사건만을 취급하는 지적 재산 전문 부서이다.
16. 약 3만 명의 전세계 법조인 및 195개 이상 법조 단체가 가맹하는 세계 최대 법률가 단체이다.
17. 일변런에는 일변런 회장 직할의 전문 기관으로서 교육을 맡는 “종합 연수 센터”가 존재하고, 이 센터와 협력하여 지식 재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8. 덧붙여서, 초대 멤버는 위원장 이외에, 부위원장은 마즈모토 시게토시(도쿄)와 우자와 스스무(제1), 위원은 가와구치 쇼조(도쿄), 아나미치 스스무(도쿄), 와쿠이 소지(도쿄), 나가타 다지로(제1), 마즈카타 마사히로(제1), 우치다 모리후미(제2), 이시구 준페이(오사카), 노마 마사야키(교토), 사지료조(나고야), 미하라 미치야(후쿠오카)였다. 위원장 나가이 알렉산더 (변호사회에 등록된 이름은 “아레키잔”으로, 어머니가 독일인이었고, 가정에서는 독일어로 대화하고 있었다고 한다)는 외교관의 경력도 있는 저명한 국제파의 변호사였다. 천식이나 감기 등의 치료제 성분인 에페드린을 발견·추출하여 일본 근대 약학의 시조라고도 불리는 약학자 나가이 나가요시의 장남이다.
19. 특허청의 산업 재산권 제도의 개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더 구체적으로는 1950년 7월 31일에 통상산업성에서 통산 대신의 자문 기관으로서 "산업 재산권 제도 개정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1950년 12월 20일자로 특허청 장관에게서 일변런에 대해 동위원회에 1951년 3월 말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산업 재산권 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이라는 자문 보고서가 보내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50년 12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산업재산권제도 개정 조사위원회"가 1951년 3월 5일에 설치되었다. 위원 수는 10명이며, 동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나카마츠 준노스케(제2)이다. 그리고 특허 심판 및 소송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일변런 회장에게 보고했다. 1957년 도쿄고등법원 장관에게 “특허법 128조의 4 제 2항에 규정된 서류(특허청의 거절사정 불복 항고 심판사건 기록)의 취급 방법을 바로 하는 건”에 대한 조화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결정을 마지막으로 임무가 끝나 위원회가 폐지되었다.
20. 심의회 개최의 취지는 "자유화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장기 발전 여부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에 강하게 좌우되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과학 기술의 진보는 거액의 연구 투자를 기반으로 점점 걸음을 빨리 하여,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입장에서 연구 성과, 발명 등이 산업 재산권 제도에 의해 정확하게 권리화되며 그 내용이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외국의 경험도 참작하면서 현실적인 입장에 서서 공업소유권제도의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도모하고,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그 방식에 근본적인 검토를 더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취지에 의해, 이제 산업 재산권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산업 재산권 제도 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식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으며, 1962년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내용인 것이 흥미롭다.
21. 자문 내용은 "내외 정세의 추이와 일본 경제의 요구에 맞게 공업소유권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제도의 기본적 사항의 개정에 대해 귀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라는 것이었다.
22. 변호사 지재 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http://www.iplaw-net.com/index.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웹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운영의 사무 작업은 설립 취지에 찬동받은 민법 연구회에 신세지고 있지만, 변호사 지재 넷은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다.
23. 변호사 지재 넷 큐슈·오키나와 지역위원회의 웹 사이트 (<http://www.iplaw-qq.net/legalpack/>)를

참조하기 바란다.

24. 본 글을 작성할 당시, 일변련 법제 부 법제 제 1과 소속 사와이 야스타카 씨(지재 센터 담당 사무국)가 고문서의 양상을 띄는 일변련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주었다. 이에 기록하여 감사를 표한다.

翻訳 弁護士金紀彦 (弁護士法人オルビス)

번역 변호사김기연(변호사법인 오르비스)

監修 弁護士小松陽一郎 (小松法律特許事務所)

감수 변호사고마즈 요이치로우(고마즈법률특허사무소)